



2022년 상병수당 시범사업 안내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2022. 6.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Contents.

PART	01	상병수당 제도 소개	6
PART	02	상병수당 시범사업 개요 (모형2: 종로구, 천안시)	10
PART	03	상병수당 지원 절차별 세부 안내사항	14
		1. 대상자	14
		2.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17
		3. 구비서류 준비	21
		4. 상병수당 신청	24
		5. 상병수당 심사 관련 유의사항	29
		6. 근로종단확인서 제출	30
		7. 급여 지급	32
		8. 연장신청	34
PART	04	기타 안내사항	40



01

상병수당 제도 소개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01. 상병수당 제도 소개

1. 정의

-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2. 국제 동향

- OECD 38개국 중 한국, 미국(뉴욕 등 일부주 도입) 제외하고 모두 도입('21년), 국제사회보장협회 (ISSA) 182개 회원국 중 163개국 도입('19년)
- ILO(국제노동기구)는 1952년부터 3차례 상병수당 운영 기준 제시

3. 제도의 주요 기능

- ① 근로자의 질병·부상으로 인한 빈곤 예방
- ② 아플 때 소득상실 걱정 없이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
- ③ 근로자가 아파도 참고 일함으로써 본인의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 방지

사례 | 무릎관절 수술로 인해 6개월간 일을 쉬어야 하는 택배노동자 A씨

- (도입 전) 6개월간 근로소득 상실 → 가게 저축을 소진, 대출로 생활비 충당하다가 결국 기초생활수급 신청
- (도입 후) 상병수당 통해 소득 보전, 대출·공적부조 등의 도움 없이도 생계 유지 가능

사례 | 가슴에 멍울을 발견한 학습지 교사 B씨

- (도입 전) 소득 상실 우려로 병원 방문·치료를 미룸 → 뒤늦은 유방암 및 전이 진단, 치료기간 장기화
- (도입 후) 일을 쉬더라도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병원 조기 방문 → 초기 유방암 진단, 완치 후 근로에 다시 복귀

사례 | 대상포진에 걸린 임금근로자 C씨

- (도입 전) 소득 상실 우려, 직장 분위기 등으로 인해 아파도 참고 출근 → 통증·가려움으로 일할 때 집중을 하지 못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대상포진 재발
- (도입 후) 상병수당을 받으며 충분한 치료·휴식 → 복귀 후 높은 생산성 발휘, 재발 없이 관리

4. 우리나라 상병수당 제도 논의 배경

-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 및 감염병 확산 방지 차원에서 상병수당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협약’ 체결('20.7.28)을 계기로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 시작

5. 시범사업의 목적

- 상병수당 본 제도 도입 전 3년간 단계별 시범사업 통해 정책효과 분석 및 운영체계 점검 예정
 - 이를 토대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본 제도 운영방안 마련





02

상병수당 시범사업 개요

모형2: 종로구, 천안시

02. 상병수당 시범사업 개요 (모형2: 종로구, 천안시)

1. 주요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2022.7.4. ~ 2023.6.30.
지원 대상자	(거주지)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주민등록등본 기준) * 단, 협력사업장 근로자는 거주지 무관하게 지원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 (국적) 대한민국 국민 * 단,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 가구인 외국인, 난민은 예외적으로 지원 (취업자) 다음 기준 중 1가지 충족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입기간 1개월 이상) - 고용보험 가입자(가입기간 1개월 이상) * 일용근로자는 직전 1개월 중 10일 이상 가입한 경우 인정 - 자영업자 (사업자등록 3개월 이상 + 전월 매출 191만원 이상) - 지원제외자 - 질병목적 외 휴직자, 고용보험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생계급여·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해외출국자 등
지원 요건	-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부상으로 2주일이 넘는 기간(대기기간 14일) 동안 일을 하지 못할 때 * 해당 질병·부상으로 검사 또는 수술 이력이 있어야 하며, 미용 목적 성형 및 출산·분만 제외 - 수급기간 동안 일을 하지 않았으며, 보수를 받지 않았음에 대해 사업주, 소득지급처 등의 확인 필요
지원 내용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대기기간 14일 제외) 동안 1일 43,960원 지원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

2. 상병수당 지원 절차

신청자	건보공단	신청자
① 상병 발생	⑤ 자격심사 (취업여부 등)	⑧ 근로중단확인서 제출
② 진단서 발급	⑥ 의료인증 심사	⑨ 상병수당 수급
③ 구비서류 준비	⑦ 심사 결과 통보 (→ 신청인)	⑩ 필요 시 연장신청
④ 상병수당 신청 (→ 건보공단)		

- ① (상병 발생) 상병수당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업무 외 상병 발생
- ② (진단서 발급) 시범사업 지역 내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 * 최초 신청 시에는 근로활동불가기간 4주(대기기간 포함 4주)까지만 신청 가능, 이후 필요 시 연장 신청
- ③ (구비서류 준비) 근로중단계획서 등 신청에 필요한 서류 준비
- ④ (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단에 상병수당 지급 신청
 -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사방문, 우편(등기), 팩스 및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⑤~⑦ (심사) 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요건 충족 여부 및 근로활동불가기간의 적정성 심사.
 - 신청인에 심사 결과 통보
 - * 심사기간 동안 실제 근로 중단 여부 확인 위한 사업장 현장방문&유선확인 등 실시 가능
- ⑧ (근로중단확인서) 심사 결과에 따라 근로중단확인서 제출
- ⑨ (급여지급) 근로중단 실적 확인 후 급여 지급*
 - * 연장신청·서류보완 등이 없는 경우 신청 후 60일 가량 소요. 심사 과정에서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30일, 연장신청이 접수되는 경우 추가 60일까지 추가 소요 가능
- ⑩ (연장 신청) 근로복귀 전 질병·부상이 회복되지 않은 경우 수급기간 연장신청 가능
 - (연장 시마다 8주까지 신청 가능)



03

상병수당 지원 절차별 세부 안내사항

03. 상병수당 지원 절차별 세부 안내사항

1 대상자

1. 기본자격 (거주지, 연령, 국적)

가. 거주지

- 주인등록등본 상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신청일 기준)

- 단, 시범사업 지역 지자체가 지정한 협력사업장 근로자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대상자에 포함

* 단, 연장신청 시 ①거주지 이전 및 ②협력사업장 근로자 퇴직 경우 연장신청 불가

나. 연령

- 주인등록등본 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15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신청일 기준)

* 연장신청 시 연령 기준 미확인 → 연령 초과하더라도 연장신청 가능

다. 국적

- 대한민국 국적자 (신청일 기준)

- 단,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자 인정(신청일 기준)

* 외국인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 ①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②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③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의 경우 상병수당 지원 가능

* 연장신청 시 국적 기준 확인 → 국적 기준 미충족 시 연장신청 불가



Q & A

Q.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업장 소재지가 시범사업 지역인 경우에 신청 가능한가요?

A.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거주지를 기준으로 운영되므로,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시범사업 지역 내 지자체가 지정한 협력사업장 근로자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상병수당 신청은 저소득층만 가능한가요? 소득·재산 기준이 있나요?

A. 1단계 시범사업의 경우, 소득·재산 기준을 별도로 두지 않습니다.

Q. 한 번 상병수당을 신청해서 지급받았는데, 이후에 다른 상병이 발생했다면 또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신청과 마찬가지로 모든 자격·상병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취업자

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30일)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 업무 외 상병으로 근로활동이 어렵다고 인정되어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한 날을 뜻함

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보험 가입자*

* 1) 14개직종 노무제공자, 플랫폼노동자, 예술인, 자영업자(임의가입), 일용근로자 등

-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30일)간 고용보험 가입자격 유지

*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30일) 중 10일 이상 근로하고 고용보험 가입 시 취업자 기준 충족

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닌 자영업자

- 아래 사업자등록 유지기간 및 매출 기준 모두 충족 필요

- ①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3개월(90일) 동안 사업자등록을 유지
- ②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매출이 191만원 이상

* 예)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이 7월 4일 → 6월 매출이 191만원 이상



Q & A

Q. 상병수당 신청 전 본인의 건강보험 혹은 고용보험 가입자격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 A. ① (건강보험 가입자격 확인)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민원여기요/개인민원/자격조회/자격사항
 ② (고용보험 가입자격 확인)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개인/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Q. 자영업자이며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이 7.4일이라면, 취업자 기준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 A. ① 사업자등록이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을 포함한 직전 3개월(90일) 동안 유지되었는지를 확인 (4월 6일 ~ 7월 4일)합니다.
 ② 매출 발생은 7월 직전 1개월에 대해서만 확인(6월 1일 ~ 6월 30일) 합니다.

* 4,5월의 매출발생 여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Q. 시간제 근로자, 프리랜서, 농어업인, 1인 자영업자 등도 신청할 수 있나요?

- A. 근무시간이나 직종에 관계없이 상병수당 시범사업 취업자 기준(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보험 가입자, 자영업자)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Q. 건강보험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A. 건강보험 가입 직역 또는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상병수당 시범사업 취업자 기준(고용보험 가입자, 자영업자)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1)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조종사,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3. 지원 제외자

☑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기준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없음

- 고용보험 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 휴직자: 상병 발생 전 근로 중이 아닌 취업자
 - * 다만, 질병사유로 인한 휴직자는 상병수당 지원 대상 인정
-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수급자
- 자동차 보험 적용자
- 공무원 및 교직원(법적으로 유급병가·유급질병휴직을 보장받는 경우)
- 국가 및 지자체 기초생활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 * 예> 현역으로 군복무중인 자, 교도소 등에 수용 중인 자
- 해외 출국자(단, 추후에 불가피한 경우*임을 소명하는 경우 인정 가능)
 - * 예> 질병의 치료를 위해 출국한 경우(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 주민등록 말소자, 사망자

☑ (유의사항) 유급병가 등을 통해 근로를 하지 않아도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는 기간 동안에는 상병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유급병가·유급휴직 등을 우선적으로 사용한 후에도 질병·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고, 상병수당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 A

Q. 공무원은 아니지만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경우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정부기관이나 학교에서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 공공기관 종사자 등은 유급병가(휴직)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유급병가(휴직) 기간 종료 후 관련 요건 충족 시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일용직, 특고직 근로자의 경우 다쳐서 일을 하지 못하면 해고(실직)될 수 있는데, 그래도 지원이 되나요?

A.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해 상병수당을 받던 중에 실직을 하더라도 이미 인정된 근로활동불가기간 동안 상병수당은 계속 지급됩니다. 다만, 고용보험 실업급여와의 중복수급은 불가능합니다.

Q. 재난적의료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A. 신청 가능합니다. 재난적 의료비는 질병에 대한 '의료비 지원' 정책이고, 상병수당은 '소득보전' 정책으로, 양 제도는 지원 목적 및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동시 수급 가능합니다.

Q. 현재는 타 제도(고용보험/산재보험/생계급여) 수급자가 아니지만 타 제도 수급을 신청하여 심사가 현재 진행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병수당 수급을 위해 신청을 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상병수당 신청은 가능하나, 상병수당 심사 중 또는 상병수당 지급 후에 타 제도 급여를 수급하게 된 경우 상병수당 지급에서 제외되거나 지급액 차감, 환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1. 상병수당 지원 대상 질병·부상의 범위

가. 기본원칙

-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2주일이 넘는 기간(대기기간 14일) 동안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진단서 발급 가능

* 해당 질병·부상의 진단을 위해 관련 임상적 검사 또는 영상진단검사를 실시하였거나, 수술(시술)이력이 있는 경우만 진단서 발급 가능

- ☑ 대기기간이란?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과 상병수당 수급권이 발생하는 시점까지의 차이를 의미. 대기기간이 7일인 경우, 상병으로 인해 8일 이상 근로활동이 어려울 때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함. 또한, 대기기간은 제외하고 상병수당을 지급함

나. 제외 대상

- 질병 치료 및 필수 기능 개선을 위한 진료가 아닌 경우 * 예> 미용 목적으로 행해지는 성형 수술(시술)
- 출산·분만 관련 진료건으로,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출산 시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등 신청·수급 가능
- 질병·부상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임상적 검사(영상진단검사 포함) 또는 수술(시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 ☑ (유의사항) 상병수당 진단을 위한 별도 검사가 아니며, 일반적인 진료 과정에서 질병·부상의 명확한 판정과 치료를 위해 임상적 검사가 필요한 질병·부상만이 상병수당 지원 대상이 된다는 의미임



Q & A

Q. 진단서 발급기관에서 검사 또는 수술을 받았어야 하나요?

- A. 진단서 발급기관과 검사/수술(시술)을 받은 기관이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진단서를 작성하는 의사가 검사 및 수술 내용/결과를 알고 진단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의무기록지 등을 의사에게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Q. 검사 또는 수술(시술)을 언제 받았어야 하나요?

- A. 진단서 작성일 전 1개월 내 검사 또는 수술(시술)이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Q. 임신부는 상병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 A. 임신부도 출산·분만과 관련없는 업무 외 상병(예> 골절)으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에는 상병수당을 신청 및 수급 가능합니다. 다만, 취업자 기준 등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Q. 성형수술은 무조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 A.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은 지원에서 제외되지만, 질병 치료 목적의 성형수술(예> 중증화상으로 인한 피부이식술)에 대해서는 상병수당을 신청 및 수급할 수 있습니다.

Q. 상병이 업무상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상병수당과 산재보험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어 산재보험 휴업급여를 받게 될 경우 상병수당과의 중복 수급은 불가합니다.

2. 진단서 발급 가능기관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방문

-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 I, II 대상 지역(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내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 지역별 참여의료기관 목록은 건보공단* 및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상병수당' 검색 →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탭 선택
- 정신신경계 질환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만 발급 가능
 - * 기질성 정신질환은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발급 가능
- 참여 의료기관이 아닌 경우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음에 유의



Q & A

Q. 경북 포항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서울 종로구의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4개 지역의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어디서든지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의료기관에 비치된 사전문답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

가. 사전문답서

- (필요성)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작성을 위해 신청인의 직종, 직무의 내용 등 직업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
- 작성 및 활용
 - ① 상병수당을 신청하고자 하는 환자는 진료 대기 중에 의료기관에 사전문답서 서식 요청
 - ② 안내에 따라 사전문답서 양식을 받아 작성
 - ③ 진료 시 환자가 의사에게 사전문답서 제출, 의사는 이를 활용하여 진단서 작성
 - ④ 진단서 작성 완료 후 사전문답서를 다시 받아 보관, 상병수당 신청 시 다른 구비서류와 함께 건강보험공단에 제출

* 환자가 의식불명 등의 사유로 사전문답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담당의사가 진단서에 그 사유를 표기, 사전문답서 제출 생략



Q & A

Q. 직업이 여러가지인 경우에 사전문답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A. 주된 직업 한 가지에 대해서 작성하되, 특히 질병·부상으로 인해 근로에 영향을 많이 받는 직업에 대해 작성하면 됩니다.

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

- (필요성)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원본을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전산 제출하는 것에 대해 환자의 동의 필요
- 작성 및 활용
 - ① 의료기관이 상병수당을 신청하고자 하는 환자에게 사전문답서와 함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 안내
 - ② 안내에 따라 동의서 양식을 받아 작성, 의료기관에 제출

4.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 (내용) 의학적 진단명, 병력뿐 아니라 직무특성 및 활동제약을 나타내는 정보, 근로활동불가기간 등을 기재한 진단서 발급

* (유의사항) 의사가 진단서에 작성한 근로활동불가기간이 최종 상병수당 급여일수가 아니며, 최종 급여일수는 건보공단의 심사를 통해 결정됨
- (제출) 진단서 원본은 의료기관에서 건보공단으로 전산 제출하며, 사본을 의료기관에서 출력받아 상병수당 신청 시에 기타 구비서류와 함께 건보공단에 제출 필요
- (비용) 최초 신청용 진단서 15,000원
 - 진단서 발급 시에 신청인이 부담하되, 상병수당 지급 승인 시 건보공단에서 신청인에게 발급비용 환급 (최초진단서는 100%, 연장진단서는 50%)



Q & A

Q. 같은 상병에 대해 진단서를 2개 이상 발급받을 수 있나요?

- A.** 동일한 근로활동불가기간 내에 최초신청을 위한 진단서는 2개 이상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단, 연장 신청을 위한 진단서는 근로활동불가기간 종료 7일전부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진단서 발행을 취소할 수 있나요?

- A.**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여 진단서 취소·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취소한 진단서에 대해서는 비용지급이 불가합니다.

Q. 진단서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A.** 상병수당을 지급할 때 진단서 지원금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Q. 자격심사 탈락 등으로 상병수당 지급을 받지 못하면 진단서 비용 지원도 받지 못하는 건가요?

- A.** 상병수당 지급 대상으로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1일 이상의 기간에 대해 상병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에 대해서만 진단서 비용을 지원합니다.

● 의료기관에서 근로활동불가기간과 관련된 질병·부상의 진료내역(최근 1개월 이내)을 확인할 수 있는 의무기록을 발급, 상병수당 신청 시에 기타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예시) 진단서의 주요 치료 내역 및 검사에 혈액검사 결과만 표기한 경우 제출서류 → (진단서 발급기관)초진기록지, 해당 혈액검사결과지 제출



3 구비서류 준비

가.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서식1)

* 홈페이지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는 별도 출력·작성 불필요,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서 작성 가능

나.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

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별도 서류 미제출

②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보험 가입자 :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또는 ‘4대 사회보험 가입자 자격내역 확인서**’

*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또는 인터넷 발급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개인/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자격내역 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발급

③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닌 자영업자

* 사업자 등록기간은 별도 서류 제출 없이도 전산확인

① 【서식 2】사업 활동 및 매출신고서 (자영업자 본인 작성)

* 서식은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출력 가능

②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이 속한 달의 전월의 사업장 매출내역*

* 매출내역은 ㉠신용·체크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전표, ㉢매출내역이 명시된 세금계산서만 인정

㉠ (신용·체크카드 매출전표)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통합조회서비스접속/매입내역/월별 매입내역 조회/해당 자료 출력

㉡ (현금영수증 전표)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접속/조회·발급/현금영수증조회/매출내역(누계)조회/해당 자료 출력

㉢ (세금계산서) 전자 세금계산서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접속/조회·발급/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및 통계조회/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조회/해당 자료 출력, 수기 세금계산서의 경우 개별 증빙자료 구비하여 납부

다. 근로중단 계획서

● (내용) 상병수당 신청기간 동안 근로를 중단하고, 사업장 등에서 보수를 미지급받을 것이라는 내용의 계획 제출

● (서식·작성주체) 취업자 분류에 따라 상이

* 서식은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및 출력 가능

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사업장 근로자

- (서식)【서식 3-1】근로종단 계획서(사업장 근로자용)

- (작성주체) 사업주

* 사업장 대표가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 인사·복무 담당 부서 또는 신청인이 근무하는 해당 부서에서 작성하고 사업장 직인을 찍어 제출

②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보험 가입자 (자영업자 제외)

- (서식)【서식 3-2】근로종단 계획서(노무제공자용)

- (작성주체) 노무수령자 또는 소득지급처 대표

* 사업장 대표가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 인사·복무 담당 부서 또는 신청인이 근무하는 해당 부서에서 작성하고 사업장 직인을 찍어 제출

 사업주 또는 소득지급처에 상병수당 제도를 설명해야 할 경우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업장용 상병수당 시범사업 홍보 브로셔'를 활용하세요!

③ 자영업자

- (서식)【서식 3-3】근로종단 계획서(자영업자용)

- (작성주체) 본인



Q & A

Q. 직업이 2개인 경우 모든 직장에서 근로종단 계획서를 받아와야 하나요?

A. 모든 사업장 또는 소득지급처(노무계약처)에서 계획서를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1개 사업장 자료만 제출 시 건강보험공단에서 서류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했을 때는 근로를 하고 있었지만, 상병수당을 신청할 때 상병으로 이미 실직했거나 노무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예> 1.1일 진단서 발급, 1.10일 실직, 1.13일 상병수당 신청

A. 상병수당 신청 시에 근로종단계획서와 함께 퇴직증빙서류, 노무계약종료 또는 해촉증명서 등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후 근로종단확인서는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상병수당을 신청할 때 이미 근로활동불가기간이 종료된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예> 1.1일 진단서 발급, 1.1~1.10일 근로활동불가기간, 1.13일 상병수당 신청

A. 상병수당 신청 시에 근로종단계획서 대신 근로종단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후 근로종단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 의료기관 발급서류

- ①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사본
- ② 의무기록지

항목		해당 의무기록	비고
필수	최초진료	진단서 발급기관의 초진기록지	(최초)신청자 공통 제출
필수 ※ 1개 이상 제출	수술(시술)	수술(시술)기록지 (진단명, 수술명, 수술일자 포함)	진단서 기재사항 관련 의무기록 제출* (1개월 이내 수술(시술) 및 검사 관련)
	검사	검사기록지	
선택	입원	입퇴원기록지(진단명, 입원기간 포함)	1개월 이내 입원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선택적 제출

마.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

바. 신청자 본인 계좌 통장사본 1부

 신청 시에 상병 경험 등에 대한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상병수당 신청

1. 신청 주체

-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

- 대리인의 인정 범위

-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증 또는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족*에 한함

* ①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단, ②번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함)

- 다만, 예외적으로 상기 대리인이 없고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한 상병일 경우 신청용 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또는 신청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신청 가능

- 대리인의 신청 방법

-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에 따라 신청 방법 상이

신청 구분		신청 방법
대리인의 범위	①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족 혹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족	① 방문, 우편(등기), 팩스 신청, ② 홈페이지 인터넷 신청 가능
	②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③ 신청인이 근무하는 사업장	① 방문, 우편, 팩스 신청만 가능

-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위임장(서식9)' 및 다음의 서류 추가제출

대리인	공동 제출서류	추가사항
① 건강보험증 또는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된 가족	①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②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③ 위임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위임자와 대리인의 관계가 공단 전산에서 확인되는 경우 위임자의 신분증은 생략가능
②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③ 신청인이 근무하는 사업장	① 대리인의 증명을 위해 위임장에 의료기관 또는 사업장 직인 날인 ②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 필요 시 유선전화를 통해 위임 여부 추가 확인 가능

2. 신청방법

가. 신청지

- 신청인 주소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신청
 - 협력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지자체 명	관할 지사명	지사 소재지	FAX번호
서울시 종로구	종로지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35, 16층 상병수당운영팀	02-3275-8289
충남 천안시	천안지사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8로, 2층 상병수당운영팀	041-850-4436

나. 신청 방법

- (방문) 관할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우편 또는 팩스) 관할 지사로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 모바일 앱(The건강보험)에서 모바일 팩스 기능으로 지사 검색 및 제출 가능(민원여기요/팩스발송·결과조회/모바일팩스 보내기)
 - 민원여기요/팩스발송·결과조회/모바일팩스 보내기
-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인증서 로그인 후 민원여기요/상병수당(가칭)/상병수당신청(가칭) 접속, 상병수당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 모바일 앱(The건강보험)은 상병수당 신청은 불가하며, 신청절차 조회만 가능

다. 신청 기한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 * 진단서 발급일보다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이 늦은 경우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로부터 14일 이내
 - 우편(등기) 신청의 경우 관할 지사 도착일 기준
 - * 예시> 진단서 발급일 5.1.의 경우 5.14.까지 지사 도착 서류에 한해 인정



Q & A

Q. 시범사업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A. 상병수당 진단서 발급 및 상병수당 신청 모두 7월 4일부터 가능합니다

Q. 시범사업 기간(1년) 종료 후에는 신청할 수 없나요?

A. 시범사업 기간이 종료되면 상병수당 신청이 어렵습니다.

1단계 시범사업 기간('22.7.4~'23.6.30)의 연장 여부는 해당 지역의 시범사업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Q. 상병수당을 받고 있던 중에 시범사업 기간이 종료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상병수당을 받는 중에 시범사업 기간이 종료되어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승인한 급여기간까지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일부 서류는 온라인으로, 나머지는 우편 또는 방문해서 제출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일자 또는 우편 도착/방문일자 중 더 늦은 일자를 신청일자로 인정하게 됩니다.

Q.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제출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관할 공단 지사에 연락하여 문의 바랍니다.



< (요약) 상병수당 신청 시 신청인 구비서류 및 제출방법 >

구분	구비서류	서식 배부처	발급처	작성주체	제출방법	비고	
최초 신청	① 상병수당 신청서	공단 홈페이지	-	신청인 본인	인터넷, 방문, 우편(등기), 팩스	대리신청 가능	
	②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의료기관	의료기관	의사	(원본) 의료기관이 공단에 전산 제출 (사본) 신청인이 인터넷, 방문, 우편(등기), 팩스 통해 제출		
	③ 의무기록지	의료기관	의료기관	의사	인터넷, 방문, 우편(등기), 팩스		
	④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	의료기관 (공단 홈페이지)	-	신청인 본인	인터넷, 방문, 우편(등기), 팩스		
	⑤ 근로종단 계획서	사업장 근로자	사업주	사업주	인터넷, 방문, 우편(등기), 팩스	직종별 양식 구분	
		노무계약자	소득지급처	소득지급처			
		자영업자	본인	본인			
	⑥ 본인 통장 계좌 사본	-	-	-	인터넷, 방문, 우편(등기), 팩스		
	⑦ 고용보험 가입내역	'고용·신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또는 '4대 사회보험 가입자 자격내역 확인서'	-	-	근로복지 공단	본인	인터넷, 방문, 우편(등기), 팩스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자격내역 확인서'는 상병수당 신청 시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발급하여 제출 가능				
⑧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		공단 홈페이지	본인	본인	인터넷, 방문, 우편(등기), 팩스		
⑨ 매출증빙 자료	신용·체크카드 매출 전표 현금영수증 매출내역이 명시된 세금계산서	-	여신금융 협회	-	인터넷, 방문, 우편(등기), 팩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영업자만 해당	
		-	국세청 홈택스				

구분	구비서류	서식 배부처
제출방법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거주지역(협력사업장명) 체크 → 설문조사 작성 → 신청서 입력 → 신청서 외 구비서류 이미지 파일 첨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방문 또는 우편(등기), 팩스 발송 - (관할 지사 주소 및 팩스번호 검색) ※ 신청서를 홈페이지에서 제출한 경우라도 그 외 구비서류 및 보완서류는 방문 또는 우편(등기), 팩스로 제출 가능

< 신청의 근거형태별 필수 제출서류 (최초 신청) >

구분		필수 제출 서류		
		신청 시 (㉠+㉡+㉢)		
		㉠공통	㉡근로형태별	㉢해당사항 있을 경우
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①-1. 사업장 근로자 「건강보험법」 제3조 1항의 "근로자"를 의미	• 【서식1】상병수당신청서 • 【서식5】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 • 【서식6】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사본 • 초진기록지, 검사결과지 또는 수술기록지 등 필수 의무기록 서류 • 본인 계좌 통장 사본 1부	• 【서식3-1】 근로종단 계획서(사업장 근로자용)	• 【서식4-1】 근로종단 확인서(사업장 근로자용)
	①-2. 사업주 「건강보험법」 제3조 1항의 "사용자"를 의미		• 【서식3-3】 근로종단 계획서(자영업자용)	• 【서식4-3】 근로종단 확인서(자영업자용)
	② - 1		• 【서식3-2】 근로종단 계획서(노무제공자용) • 고용보험 가입내역서	• 대리인 신청 시 ① 가족신청서 - 【서식9】지급신청 위임장 - 위임자(신청인)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분증 사본 ② 의료기관 및 사업장 신청시 - 【서식9】지급신청 위임장 (직인必)
	①외의 고용보험가입자 중 노무제공자 14개직종 노무제공자, 플랫폼노동자, 예술인, 일용근로자		• 【서식3-3】 근로종단 계획서(자영업자용) • 고용보험 가입내역서	• 【서식4-2】 근로종단 확인서(노무제공자용)
② - 2	①외의 고용보험가입자 중 자영업자 (임의가입)	• 【서식2】자영업자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 • 【서식3-3】 근로종단 계획서(자영업자용) • 근로활동 불가 초일 전월 기준 매출내역* 증빙자료 * 매출내역은 ㉠ 신용·체크카드 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전표, ㉢ 매출내역이 명시된 세금계산서만 해당		• 【서식4-3】 근로종단 확인서(자영업자용)
	③ ①, ②외의 자영업자			• 타인계좌 입금 요청시 - 【서식11】상병수당 지급계좌 변경 신청서 • 외국인일 경우 - 대상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등)

5 상병수당 심사 관련 유의사항

1. 서류 보완 요청

- 필수구비서류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심사 중 정확한 판정을 위해 추가 증빙서류 등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인에게 서류보완 요청 가능

- 상병수당 신청서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로 SMS 또는 알림톡을 통해 보완요청자료의 내용, 자료제출기한, 제출방법 등을 안내 예정

* 통상적으로 신청으로부터 60일 이내 급여 지급되나, 자료 보완 요청 시 30일까지 추가 소요될 수 있음

2. 사업장 현장방문 등

- '근로중단계획서' 상 예정된 근로중단 이행 여부 점검을 위해 공단은 신청인의 근로현장*을 예고 없이 방문하거나, 유선 등으로 근로 중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상병수당 신청서에 기재한 근무 장소 소재지

- 현장방문 등을 통해 근로중단계획서상 예정된 근로활동불가기간 중 근로를 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해당 근로일은 상병수당 지급일수에서 제외함

- 3회 이상 근로가 적발될 경우 전체 상병수당 미지급

3. 심사 기간 및 결과

- 심사는 신청일로부터 최대 5~6주 가량 소요될 수 있으며, 심사 완료 시 SMS, 알림톡 등으로 통보 예정

- 상병수당 대상자격요건을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상병수당 신청기간(진단서상 근로활동불가기간)의 적정성에 대하여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 예정

* 상병수당 진단서의 근로활동불가기간이 최종 수급기간이 아님에 유의

- 공단의 심사 결과 수급기간이 조정된 경우 심사 결과 시에 함께 통보

6 근로중단확인서 제출

가. 근로중단확인서 제출 안내 (건강보험공단 → 신청인)

- 건강보험공단 심사 결과 상병수당 지급 대상자로 승인된 경우 SMS 또는 알림톡을 통해 근로중단 확인서 제출 안내 예정

나. 근로중단확인서 준비·작성 (신청인)

- (내용) 실제로 상병수당 신청기간 동안 근로를 중단하였으며, 사업장 등에서 보수를 미지급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 작성·제출

* (유의사항) 건강보험공단 심사 결과 근로활동불가기간이 최초 신청 기간에 비해 조정된 경우 조정된 기간에 대한 확인서 제출 필요 (예) 4주에 대해 신청 → 심사 결과 3주로 조정 : 3주에 대해 확인서 제출)

- (서식·작성주체) 취업자 분류에 따라 상이

* 서식은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및 출력 가능

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사업장 근로자

- (서식)【서식 4-1】근로중단 확인서(사업장 근로자용)
- (작성주체) 사업주

* 사업장 대표가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 인사·복무 담당 부서 또는 신청인이 근무하는 해당 부서에서 작성하고 사업장 직인을 찍어 제출

②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보험 가입자 (자영업자 제외)

- (서식)【서식 4-2】근로중단 확인서(노무제공자용)
- (작성주체) 노무수령자 또는 소득지급처 대표

* 사업장 대표가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 인사·복무 담당 부서 또는 신청인이 근무하는 해당 부서에서 작성하고 사업장 직인을 찍어 제출



사업주 또는 소득지급처에 상병수당 제도를 설명해야 할 경우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업장용 상병수당 시범사업 홍보 브로셔'를 활용하세요!

③ 자영업자

- (서식)【서식 4-3】근로중단 확인서(자영업자용)
- (작성주체) 본인

다. 근로중단확인서 제출 (신청인 → 건강보험공단)

- (제출기한) 상병수당 심사결과 통보일 기준 7일 이내, 또는 심사를 통해 인정된 근로활동불가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

* 두 날짜 중 더 늦은 날짜를 기한으로 함

** 예시> 심사결과 5.1. 통보 시 5.7.까지 지사 도착 실적제출에 한해 인정

- (제출방법) 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등기), 팩스를 통해 제출

지자체 명	관할 지사명	지사 소재지	FAX번호
서울시 종로구	종로지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35, 16층 상병수당운영팀	02-3275-8289
충남 천안시	천안지사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8로, 2층 상병수당운영팀	041-850-4436



Q & A

Q. 직업이 2개인 경우 모든 직장에서 근로중단 확인서를 받아와야 하나요?

A. 모든 사업장 또는 소득지급처(노무계약처)에서 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Q. 근로중단계획과 근로중단확인서의 내용이 달라도 되나요?

A. 두 서류의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중단계획서에는 7.1일부터 7.9일까지 유급병가를 사용한다고 제출하였는데, 상황 변경 등으로 인해 7.1일부터 7.10일까지 유급병가를 사용했을 경우 근로중단확인서에 변경된 내용을 제출합니다.

상병수당 급여 산정 및 지급은 근로중단확인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7 급여 지급

1. 급여일수 산정

상병수당 일당 지급액 43,960원	X	급여지급일수	+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최초 진단서 15,000원)
------------------------	---	--------	---	---------------------------------

- (급여지급일수) 공단 심사를 통해 결정된 근로활동불가기간을 바탕으로 대기기간(14일) 및 수급요건 미충족 기간*을 차감하여 결정

* [①근로활동불가기간 중 근로활동을 재개했거나, 휴가기간 중 급여를 수령한 전체 기간] +
[②타 제도 중복수급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기간] - [①,② 중복기간]

** (유의사항) 대기기간 중에는 유급병가 또는 연차 사용하여 급여를 수령했다라도 급여지급일수에 영향 없음

- 최대보장기간(1년 내 12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급여 지급 가능

* 1년 내 여러 번 상병수당을 신청하더라도 각각의 신청 건이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총 합산 급여일수가 최대보장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

예시

- [예시] 대기기간 14일, 최대보장기간 120일인 근로활동불가기간 모형
3.31~3.31일(31일)에 A상병, 5.1~8.31일(123일)에 B상병이 발생한 경우
- A상병에 대해 17일(31일-대기기간 14일), B상병에 대해 103일(최대보장기간 120일에서 A상병에 대해 지급한 17일 제외) 지급 가능 → 총 120일

- (진단서 발급비용) 상병수당을 1일 이상 지급받는 사람에 대해 최초 진단서 발급비용 15,000원 환급 (연장 진단서는 7,500원 환급)

2. 급여지급

- (지급일)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급여 지급 원칙
 - 다만, 서류 보완요청 등으로 인해 심사가 지연된 경우 30일 이내, 심사 중 연장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60일 이내 추가 소요 가능
- (지급계좌) 신청인 본인 계좌 지급 원칙
 - 본인 신청에 따라 예외적으로 가족 또는 제3자 계좌 지급 가능 (다음 페이지 박스 참조)

- ① 만19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되는 보호자에게 지급가능
- ② 신청인이 사망한 경우 부양의무자(「민법」상 상속순위)의 계좌로 지급가능, 후순위 대상자가 수령하고자 할 경우 '상속대표합의동의서' 필요

〈환자의 파산, 압류 등에 따른 지급계좌변경 증빙서류〉

수령대상	부양의무자	이해관계인(가족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증빙서류	① 사망이 확인되는 자료 (사망진단서 등) ② [서식11]지급계좌변경신청서 ③ 대리인의 신분증 ④ 수령인의 신분증	증빙서류

- ③ 신청인이 개인 파산, 압류 등으로 불가피하게 지급계좌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환자의 파산, 압류 등에 따른 지급계좌변경 증빙서류〉

수령대상	가족	이해관계인(가족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증빙서류	① [서식11]지급계좌변경신청서 ② 대리인 위임장 ③ 압류 파산 증빙서류 ④ 위임자의 신분증 ⑤ 대리인의 신분증 ⑥ 수령인의 신분증	① [서식11]지급계좌변경신청서 ② 대리인 위임장 ③ 압류 파산 증빙서류 ④ [서식19]인우보증서(수령인에 대한) ⑤ 인우보증인* 신분증 사본 ⑥ 인우보증인 인감증명 ⑦ 위임자의 신분증 ⑧ 대리인의 신분증 ⑨ 수령인의 신분증 * 인우보증인: 수령인에 대하여 보증하는 자

- ④ 신청인이 본인이 지사에 내방하여 신청하는 경우

〈환자 본인 내방시 가족지급 계좌변경 증빙서류〉

수령대상	가족	이해관계인(가족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증빙서류	①[서식11]지급계좌변경신청서 ②수진자의 신분증 ③가족관계증명서 ④수령인계좌사본 ⑤수령인의 신분증	지원불가

8 연장신청

1. 연장신청의 요건

가. 대상자

- 자격 및 수급요건을 충족하여 상병수당을 신청한 자 중에 동일 상병으로 인해 수급기간 연장이 필요한 자
- 연장신청일 기준으로 거주지, 국적, 지원제외자 요건은 재충족 필요(연령, 취업자 요건은 최초 신청 시에 자격 충족한 경우 그대로 인정)

나. 상병수당 연장 신청용 진단서 발급 (최대 8주)

① 발급일

- 최초에 신청한 근로활동불가기간이 종료되는 날로부터 7일 전 ~ 종료일의 익일까지 발급 가능
- * 최초 근로활동불가기간 진단이 2022. 7. 1. ~ 7. 21. → 2022. 7. 15. ~ 7.22일에 연장신청용 진단서 발급 가능

② 상병 요건

- 최초 신청 시와 동일한 상병 제한 요건* 충족 필요, 다만 임상적 검사/수술은 필수가 아님
- * 미용 목적 성형, 분만·출산 등 제외
- 연장 진단서의 주상병이 최초신청 진단서의 주상병과 동일하거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 * 인과관계 유무는 1차적으로 진단서 작성의사가 판단, 최종적으로 건보공단이 심사 통해 판단

③ 발급주체

- 최초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가 발급하는 것이 원칙
- 상병의 연속성 있는 관리 및 치료가 가능하도록 하고, 최초 진단서 발급 이후로 상병의 중증도 및 예후 변화에 대한 신뢰성 있는 소견을 받기 위함
- 불가피하게 의료기관이 변경된 경우, 반드시 변경된 의사가 최초 진단서 내용 및 관련 의무기록을 확인하고 연장 진단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신청인이 자료를 제공할 필요
- 병·의원급 의료기관 간에 전원이 이루어진 경우 신청인이「(서식8) 전원신청서」작성·제출 필요 (서식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출력 가능)
- * (상급)종합병원 → 병/의원급 또는 병/의원급 →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한 경우 : 미제출

④ 진단서 비용

- (비용) 진단서 1건당 15,000원(비급여)
- (지원) 상병수당 연장 신청이 승인된 경우에 한하여 건강보험공단에서 진단서 비용의 50%(7,500원)을 환급 예정

* 연장신청 건에 대한 급여와 함께 지급

⑤ 의무기록 발급

- 최초진단서 발급 이후에 진행된 검사·수술·치료 내역 등에 대한 의무기록지를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필수 제출

구 분	제출서류
입원한 경우	입·퇴원기록지
수술한 경우	수술기록지
임상적 검사를 추가로 실시한 경우	검사기록지
입원/수술/검사 없이 외래진료만 한 경우	통원치료확인서

- 모든 의무기록지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통원치료확인서는 입원/수술/검사 모두가 없는 경우에만 제출



2. 신청방법

가. 기한

- 최초 신청 시의 근로활동불가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신청

나. 신청방법 : 최초 신청 시와 동일

- 신청주체 : 본인 또는 대리인*

* 건강보험증 또는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족, 불가피한 경우 상병수당 연장 신청용 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신청인이 근무하는 사업장

- 신청방법 : 신청인 주소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 우편(등기), 팩스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다. 구비서류

- 상병수당 연장 신청서(서식1)
 -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위임장(서식9)' 및 관련 서류 추가제출
- 상병수당 연장 신청용 진단서 사본
- 의료기관 발급 의무기록
- 근로중단계획서(서식3)
- 전원신청서 (해당 시에만 제출)

〈(요약) 신청인 구비서류 및 제출방법 (연장 신청)〉

구분	구비서류	서식 배부처	발급처	작성주체	제출방법	비고
연장 신청	① 상병수당 연장 신청서	공단 홈페이지	-	신청인 본인	인터넷, 방문, 우편(등기), 팩스	대리신청 가능
	② 상병수당 연장 신청용 진단서	의료기관	의료기관	의사	(원본) 의료기관이 공단에 전산 제출 (사본) 신청인이 인터넷, 방문, 우편(등기), 팩스 통해 제출	
	③ 의무기록지	의료기관	의료기관	의사	인터넷, 방문, 우편(등기), 팩스	
	④ 근로종단 계획서	사업장 근로자	사업주	사업주	인터넷, 방문, 우편(등기), 팩스	직종별 양식 구분
		노무계약자	소득지급처	소득지급처		
		자영업자	본인	본인		
	⑤ 전원신청서	공단 홈페이지	본인	본인	인터넷, 방문, 우편(등기), 팩스	해당 시에만 제출

3. 심사 및 급여지급

- 기본적인 심사 및 근로중단확인서 제출, 급여산정 및 지급 절차는 최초 신청 시와 동일함
 - 다만, 연장 신청 건에 대해서는 대기기간 미제외하고 급여 산정
- 최초 신청 시에 연장 신청이 예정되어 있었는지 여부, 연장 신청 시점 등에 따라 최초 신청 건과 연장 신청 건의 급여 통합 지급 여부는 달라질 수 있음

예시

- 최초 신청 시에 연장이 예정된 경우
 - (대상자) 최초 신청 진단서 발급 시에 4주를 넘는 근로활동불가기간이 예상되어 진단서에 '연장예정'이라고 표기된 경우
 - 연장신청 절차
 - ① 최초 신청 → ② 건보공단에서 자격 심사 → ③ 건보공단에서 자격 충족 여부와 함께 연장신청 기한을 신청인에게 안내 → ④ 기한에 맞추어 연장 신청 → ⑤ 건보공단에서 최초+연장신청 건을 통합하여 심사 → ⑥ 최초+연장신청 통합하여 근로중단확인서 제출 → ⑦ 최초+연장신청기간 전체에 대한 급여 지급
- 최초 신청 시에 연장이 예정되지 않은 경우
 - (대상자) 최초 신청 진단서 발급 시에는 연장 계획이 없었으나, 치료 중 예상치 못한 합병증 발생 등으로 연장이 필요해진 경우 연장신청 절차
 - ① 최초에 신청한 근로활동불가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연장 진단서 발급하고 연장 신청 → ② 신청 시점에 따라 최초신청 건과 연장 신청 건을 별도 심사·지급하거나 통합 심사·지급

4. 재연장 신청

- 연장된 근로활동불가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상병이 지속되어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재연장 신청 가능(최대 8주)
- 재연장 요건 및 업무처리절차는 연장 신청 건과 동일

04

기타 안내사항



04. 기타 안내사항

1. 재심의 청구

가. 신청 대상

- 신청자가 자격심사·의료인증 및 급여 지급 등에 관한 공단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 공단의 환수고지(부당청구, 중복수급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 공단의 결정을 반론할 수 있는 추가 증빙이 있는 경우에만 청구 가능

나. 신청기간

-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이란 상병수당 지급통보서, 심사 불승인 통보서, 지급중단통보서, 환수 결정 및 납부통보서 수령일을 의미함

다. 신청방법

-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등기), FAX 제출

라. 처리기간

- 재심의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 재심의 청구서 접수일 : 방문일, 우편도착일, FAX 접수일

-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부당수급 등

가. 목적

- 상병수당 신청 및 지급과정에서 거짓 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상병수당을 수급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수급하게 하는 등의 부당수급이 발생한 경우, 행정착오·시차 등으로 인해 급여 정산이 필요한 경우 환수, 급여중단, 급여 제한 등 조치

나. 환수

- (대상자) 1)허위증빙 제출 등 부당수급, 2)중복수급 제한 사회보장제도 이중수급, 3)행정시차 등 수급자격 변동으로 수급기간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급여 정산이 필요한 자
- (환수금액) 환수일수 × 43,960원

다. 급여 중단 및 제한

- (급여 중단) 신청 및 지급 또는 지급 후 일련의 과정에서 수급자의 과실 없는 행정착오, 시차 등으로 인해 수급자격이 상실 된 경우 급여 중단
- (급여 제한) 신청 및 지급, 지급 후 일련의 과정에서 고의적인 부당수급이 확인 되었을 경우 급여제한 (기간 5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6」



〈(요약) 신청인 구비서류 및 제출방법〉

구분	구비서류	서식 배부처	발급처	작성주체	제출방법	비고		
최초 신청	① 상병수당 신청서	공단 홈페이지	-	본인	인터넷, 방문, 우편(등기), 팩스	대리신청 가능		
	②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의료기관	의료기관	의사	(원본) 의료기관이 공단에 전산 제출 (사본) 신청인이 인터넷, 방문, 우편(등기), 팩스 통해 제출			
	③ 의무기록지	의료기관	의료기관	의사	인터넷, 방문, 우편(등기), 팩스			
	④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	의료기관 (공단 홈페이지)	-	본인	인터넷, 방문, 우편(등기), 팩스			
	⑤ 근로종단 계획서	사업장 근로자	사업주	사업주	인터넷, 방문, 우편(등기), 팩스	직종별 양식 구분		
		노무계약자	소득지급처	소득지급처				
		자영업자	본인	본인				
	⑥ 본인 통장 계좌 사본	-	-	-	인터넷, 방문, 우편(등기), 팩스			
	⑦ 고용보험 가입내역	‘고용·신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또는 ‘4대 사회보험 가입자 자격내역 확인서’ ‘고용·신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또는 ‘4대 사회보험 가입자 자격내역 확인서’	-	근로복지 공단	본인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자격내역 확인서’는 상병수당 방문 신청 시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발급하여 제출 가능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보험 가입자만 해당	
	⑧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	공단 홈페이지	본인	본인	인터넷, 방문, 우편(등기), 팩스			
	⑨ 매출증빙 자료	신용·체크카드	-	여신금융 협회	-	인터넷, 방문, 우편(등기), 팩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영업자만 해당	
		매출 전표						
		현금영수증						
	매출내역이 명시된 세금계산서		국세청 홈택					

구분	구비서류	서식 배부처	발급처	작성주체	제출방법	비고
승인통보 받고난후	근로종단 확인서	사업장 근로자	사업주	사업주	방문, 우편(등기), 팩스	직종별 양식 구분
		노무계약자	소독지급처	소독지급처		
		자영업자	본인	본인		
연장 신청	① 상병수당 연장 신청서		공단 홈페이지	-	본인	대리신청 가능
	② 상병수당 연장 신청용 진단서		의료기관	의사	(원본) 의료기관이 공단에 전산 제출 (사본) 신청인이 인터넷, 방문, 우편(등기), 팩스 통해 제출	
	③ 의기록지		의료기관	의사	인터넷, 방문, 우편(등기), 팩스	
	④ 근로종단 계획서	사업장 근로자	사업주	사업주	인터넷, 방문, 우편(등기), 팩스	직종별 양식 구분
		노무계약자	소독지급처	소독지급처		
		자영업자	본인	본인		
승인 통보 받고 난 후	⑤ 전원신청서		공단 홈페이지	본인	본인	해당 시에만 제출
	근로종단 확인서	사업장 근로자	사업주	사업주	방문, 우편(등기), 팩스	직종별 양식 구분
		노무계약자	소독지급처	소독지급처		
		자영업자	본인	본인		
이의가 있을 때	① 재심의 청구서		공단 홈페이지	본인	본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② 재심청구 관련 자료		-	본인	본인	



[종로지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35, 16층 상병수당 운영팀 | 전화번호 02-2171-1221~6

[천안지사]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8로 51 건강보험공단 천안지사 2층 상병수당 운영팀 | 전화번호 041-570-9184, 9244~5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 1577-1000